# [대학원생 세칙]

[시행 2026.2.23.]

## 제1장 학생증

**제1조(학생증 교부)** 입학절차를 완료한 학생은 모바일 학생증을 이용할 수 있다.

**제2조(학생증 반납)** 〈삭 제〉 (2022. 2. 14.)

**제3조(학생증 휴대)**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증을 휴대함을 원칙으로 하며, 본교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.

**제4조(학생증 변조불가)**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, 다른 목적으로 변조할 수 없다.

**제5조(학생증 재발급 신청)** 〈삭 제〉 (2022. 2. 14.)

## 제2장 집회, 게시, 인쇄물 배포

**제6조(집회, 게시의 승인)** 교내외를 막론하고 본교 학생의 모든 집회 및 게시는 학생관련 부서를 경유, 해당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7조(집회허가)** 집회허가원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최소한 일주일전에 대학원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시행할 수 있다.

1) 집회허가는 학사 일정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 특별한 경우의 집회는 대학원교학처에서 수업 진행에 대한 지장 여부를 확인하고, 해당 대학원소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.

2) 학생집회 및 단체행위가 목적에 위배되고, 학내외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장이 이를 금지할 수 있다.

3) 집회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즉시 대학원교학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광고, 인쇄물 게시허가)** 교내의 광고,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배포코자 할 때에는 대학원교학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) 게시 혹은 배포기간을 지정받은 후 첨부하여야 하며, 기간이 지나면 첨부자가 게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.

2) 게시물에 대한 제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9조(외부의 광고, 인쇄물 게시 허가)** 본교 내에서 외부기관 또는 개인의 광고, 게시, 인쇄물 배포시에도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교학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10조(원우회 예산, 결산서 제출)** 원우회의 자율적 경비는 원우회 자체에서 관리하되, 예산, 결산서는 매 회계년도 예산집행 1개월 이전 및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대학원교학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의2(원우회 회칙의 관리 및 보고)**

① 원우회의 회칙 개정(신규 제정 포함)은 대학원교학처의 사전 지도·자문을 받아야 한다.

② 원우회는 회칙 개정 또는 신규 제정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 1부를 대학원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대학원교학처는 이를 확인·보관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제출 기한은 개정 또는 신규 제정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.

**제11조(학생활동)** 원우회의 제반 활동은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시행 후 1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학생징계)** 학생징계는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, 퇴학 등으로 구분하며, 해당 구분은 다음 각 호의 사례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로 징계 처분한다.

1)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
2) 교직원 또는 학생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
3)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시설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외부에 반출한 자
4) 교내·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
5) 본 대학원의 시설물을 무단히 점거·훼손하거나 허락 없이 사용·대여·개조한 자, 또는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자
6) 학생으로서 이단 종파에 속한 자
7) 교내·외적으로 성관련 추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자
8) 기타 학생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성이 없다고 인정된 자

**제13조(법정의무교육)** 대학원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폭력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

**제14조(준용규정)**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.

## 제3장 보칙

**부칙**

1. 본 준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준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본 준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본 준칙은 200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5. 본 준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본 준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이 세칙은 202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